

표준번호	HFBC-S-213	<u>교회인사 규칙</u>	개정번호	3
페이지	1 / 7		제/개정일	2015.10.18

- 목 차 -

1. 서문
2. 목적
3. 적용범위
4. 담임목사 청빙
5. 목사 안수
6. 집사 안수
7. 서리집사 임명
8. 교회회원 및 교회회원의 징계

구분	입안	검토	심의 / 승인
책임	담임 목사	운영 위원회	사무처리회
일자	2015년 10월 11일	2015년 10월 11일	2015년 10월 18일

표준번호	HFBC-S-213	<u>교회인사 규칙</u>	개정번호	3
페이지	2 / 7		제/개정일	2015.10.18

## 1. 서문

본 규칙은 교회의 인사를 규정한 표준으로서 표지의 사무처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적용된다.

## 2. 목적

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길 교회의 리더 (담임목사, 목사, 안수집사, 서리집사)를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
## 3. 적용범위

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교회의 리더인 담임목사의 청빙과 목사, 집사들의 안수 및 징계에 대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 4. 담임목사 청빙

### 4.1 담임목사 직무대행

담임목사 유고 시 차기 담임목사 인준 전까지 담임목사의 직무를 다음의 순서로 대행한다.

① 선임 부 목회자

② 안수집사 대표

③ 목사 대표

④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교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.

표준번호	HFBC-S-213	<b>교회인사 규칙</b>	개정번호	3
페이지	3 / 7		제/개정일	2015.10.18

#### 4.2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구성

- (1) 안수집사 대표(안수집사가 없을 경우, 목사대표)는 신속히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를 구성하되, 그 구성은 안수집사와 목자로 한다.
- (2) 구성된 청빙 위원회는 온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차기 담임목사의 청빙을 준비한다.
- (3) 담임목사의 자격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면서 우리교회의 목사 안수 자격을 갖춘 자 이상이어야 한다.
  - ① 침례교 목사
  - ② 목사 안수 후 전임사역 경력 3년 이상인 자 (단, 본 교회에서 부목회자로 5년 이상 사역한 경우도 자격을 부여한다)
  - ③ 체류 신분이 적합한 자 (단, 종교비자 신청이 필요할 경우 그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)
- (4) 담임목사의 청빙 광고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일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맞게 청빙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.
- (5) 이 후 담임목사의 청빙 절차는 청빙위원회에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4.3 담임목사 인준 동의

- (1) 청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이 결정된 자는 임시 담임목사로 3개월 간 담임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되 사무처리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의장의 직무는 제외한다. (이 업무는 청빙위원회가 대행한다. 단, 본 교회 부목회자중에서 담임목사를 인선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리회 투표를 통해 인준을 결정할 수 있다.)

표준번호	HFBC-S-213	<b>교회인사 규칙</b>	개정번호	3
페이지	4 / 7		제/개정일	2015.10.18

- (2)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임시담임목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, 기도로 인준을 준비한다.
- (3) 3 개월이 경과되면 청빙 위원회 주관으로 임시 사무처리회가 개최되고 담임목사 인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.
- (4) 사무처리회에서 투표 (출석 정족수 2/3 이상)를 하고 그 결과가 동의 (의결 정족수 2/3 이상)로 나오면 교회는 담임목사 인준을 승인하고 청빙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담임목사의 인준을 선포한다.
- (5) 이와 같이 인준된 담임목사는 우리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게된다.

## 5. 목사 안수

### 5.1 목사 후보자의 자격

- (1) 자원하는 자
- (2)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
- (3) 목회자로서 소명을 가진 자
- (4)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자
- (5)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배우자(사모)의 동의를 얻은 자
- (6) 침례교단 신학대학원 (M.Div.)을 졸업한 자
- (7) 본 교회의 등록교인이며 본 교회에서 2년 이상 사역에 참여한 자

표준번호	HFBC-S-213	<b>교회인사 규칙</b>	개정번호	3
페이지	5 / 7		제/개정일	2015.10.18

(8) 위 각 항을 만족하는 자를 목회자 후보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(6)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둘 수 있다.

- ① 침례교단의 신학교의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3년이상 사역을 해온 자
- ② 현재 침례교단 신학대학원 과정 중에 있는 자로서 나이, 진로 (선교사) 등의 이유로 목사 안수가 시급한 자

## 5.2 안수 동의 절차

- (1) 목사 후보로서 위 자격에 부합하는 자에 대하여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사무처리회에 안수 동의를 요청한다.
- (2) 이 발의에 대하여 사무처리회에서 투표 (출석 정족수 1/2 이상)를 하고 그 결과가 동의 (의결 정족수 2/3 이상)로 나오면 담임목사는 목사 후보자들에 대한 안수가 교회적으로 동의됨을 선포한다.
- (3) 이후 담임목사는 남 침례교단 지방회에 목사 안수를 요청한다.

## 5.3 목사 안수 절차

목사 안수 절차는 남 침례교단 법 (또는 지방회 법)에 따른다.

## 6. 집사 안수

### 6.1 안수집사의 자격

표준번호	HFBC-S-213	<b>교회인사 규칙</b>	개정번호	3
페이지	6 / 7		제/개정일	2015.10.18

- (1) 본 교회의 정회원이 된 지 2년이상 된 자
- (2) 현재 우리 교회의 서리집사인 자
- (3) 우리 교회의 핵심 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
- (4) 본 교회에서 목자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
- (5) 다른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며 우리 교회의 평신도 리더로 대표될 수 있는 자
- (6) 십일조와 주일성수를 성실히 행하는 자

## 6.2 집사 안수 동의 절차

- (1) 안수집사 후보로서 위 자격에 부합하는 자에 대하여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사무처리회에 안수집사 후보자를 발표한다.
- (2) 교회는 안수집사 후보자를 모든 교인이 잘 알고 기도하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후보 임명에서 안수집사 선출 투표까지 3개월의 기간을 둔다.
- (3) 이 기간이 지나면 담임목사는 사무처리회에 집사 안수 동의에 대하여 요청한다.
- (4) 이 발의에 대하여 사무처리회에서 투표 (출석 정족수 1/2 이상)를 하고 그 결과가 동의 (의결 정족수 2/3 이상)로 나오면 담임목사는 안수집사 후보자들에 대한 안수가 교회적으로 동의됨을 선포한다.
- (5) 이후 담임목사는 남 침례교단 지방회에 집사 안수를 요청한다.

## 6.3 집사 안수 절차

집사 안수 절차는 남 침례교단 법 (또는 지방회 법)에 따른다.

표준번호	HFBC-S-213	<b>교회인사 규칙</b>	개정번호	3
페이지	7 / 7		제/개정일	2015.10.18

## 7. 서리집사 임명

### 7.1 서리집사의 자격

- (1) 자원하는 자
- (2) 우리교회에 등록하여 일년이 경과한 자
- (3) 우리 교회의 회원인 자
- (4)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
- (5) 목장에 속해 있으며 목장 활동에 열심인 자
- (6) 다른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

### 7.2 임명절차

- (1) 위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 한해 담임목사는 서리집사 후보 명단을 준비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임명에 대하여 검토한다.
- (2) 검토가 완료되면 담임목사는 4/4분기 사무처리회(또는 임시사무처리회)에서 차년도 교회를 섬길 서리집사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 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분기 사무처리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.
- (3) 서리집사의 임기는 교회의 회계년도 (일년)로 하며, 임기가 다한 서리집사는 재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나 위 (1)항과 (2)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(4) 서리집사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서리집사는 재 임명에서 제외된다.

## 8. 교회회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

교회회원에 대한 규정은 우리교회 교회회원규칙(HFBC-S-212)에 따른다.

(교회인사규칙 끝)